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9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 발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4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5
2. 주요 조문별 검토	19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19
나. 정의(안 제2조)	22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25
라.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일자리 대책(안 제5조·제6조) ..	27
마. 지역고용 관련 거버넌스(안 제7조~제10조, 제14조·제15조, 제25조) ..	39
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안 제11조~제13조)	64

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평가 및 컨설팅(안 제16조~제18조)	69
아. 지역고용조정지원(안 제19조~제21조)	77
자.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안 제22조~제24조)	86
차. 국제협력(안 제26조)	95
카.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7조)	96
타. 부칙	97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1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 발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혁신 등 경제여건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별 고용여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변화 등으로 지역마다 일자리의 규모와 질 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기반과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지역 스스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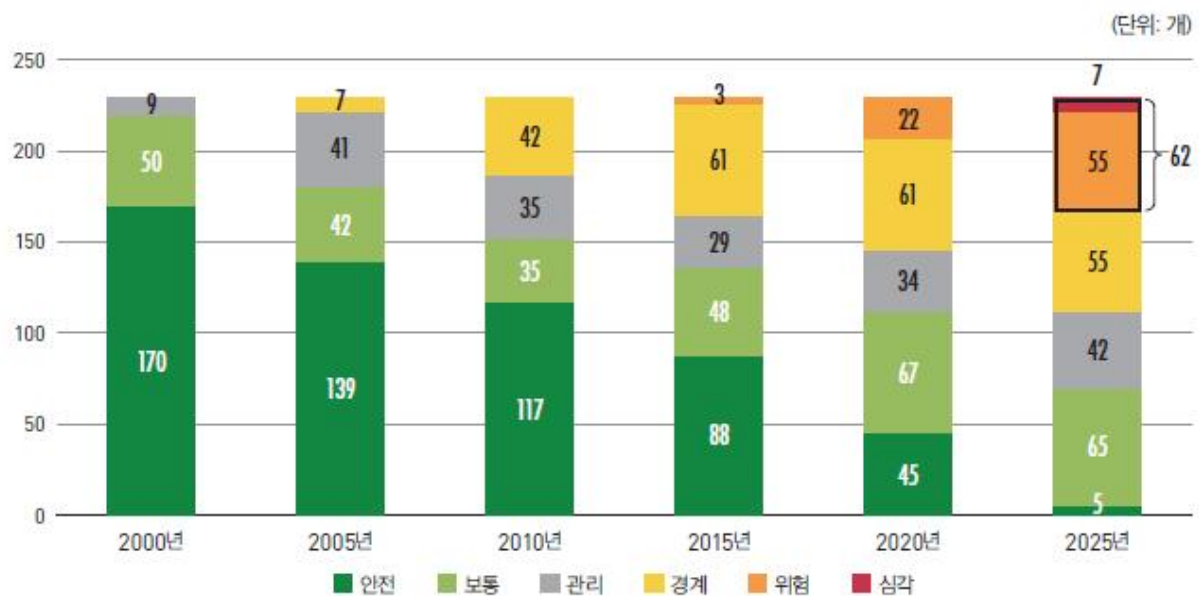
그동안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고용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와 협업체계가 미흡하며 재정지원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함.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¹⁾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유지하는 것이 중요하

1) 2025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62곳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27.1%를 차지하며, 2010년 이전까지는 한 곳도 없었으나, 2015년에 처음으로 3곳이 출현한 후, 2020년 22곳, 2025년 55곳으로 증가함. 2025년에는 소멸위험이 심각단계인 지역도 7곳이나 나타났는데, 대구 군위군, 경북 봉화군·의성군·청도군, 경남 합천군·남해군, 전남 고흥군 등으로 확인됨. 이상호,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1”,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 한국고용정보원, 2025, p. 112.

고, 지역마다 산업·인구 구조 등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일자리 정책보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연도별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시군구 기준)²⁾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00~2020년 각 연도「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 2025년은 6월 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주: 세종은 1개 지역으로 계산함

또한, 지역 간 고용상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성·소멸되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노동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지역의 고유한 여건 및 지역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상호, 앞의 글.

< 지역별 고용률 및 청년고용률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고용률	63.4	62.0	59.0	58.5	63.4	62.0	62.4	60.7	66.0
청년고용률	43.8	46.4	44.7	35.0	41.5	39.6	42.0	41.7	31.3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용률	63.6	67.1	68.0	67.6	64.6	66.5	65.1	63.6	71.8
청년고용률	45.1	44.2	47.9	47.7	38.7	39.6	43.4	41.7	46.9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e-지방지표(고용률: 2026년 6월 기준, 청년고용률: 2026년 2분기 기준).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일자리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특히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현재 지역고용 정책과 관련한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국가에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용 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³⁾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지역·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내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⁴⁾

이처럼 지역고용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법적 체계 없이 개별 법률로만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지역별로 그 특수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의 수행이 아니라, 국가고용정책의 부수적·보완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였음.

특히 「고용정책 기본법」에 지역고용과 관련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나,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제9조 및 제9조의2⁵⁾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스스로 일자

3)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설계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역 간 고용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지역고용 관련 법률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역고용에 관한 단일화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수요자가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첫째,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등 어떠한 입법 형식이 보다 효율적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재 고용정책에 관한 근거법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음. 동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①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②고용정책심의회, ③고용영향평가, ④고용정보시스템, ⑤고용형태 현황 공시, ⑥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⑦근로자의 고용 촉진 지원, ⑧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⑨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등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역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8호6)에서 국가에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두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며, 제4항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을 두고 있음.

6)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개별 조문이 정책 결정과정과 지원 내용의 측면에서 기존 법령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검토하고, 향후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입법내용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⁷⁾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지역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그런데 제정안은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는데 비해,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도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시적 지원제도로써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정책수단이라기보다는 고용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수단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지역 고용조정 지원 제도를 별다른 내용의 변경 없이 이관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은 이 법으로 이관되더라도 「고용정책 기본법」에

7)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8)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일자리의 질 개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경제 및 법체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지역 고용조정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고용조정지원 제도는 지역과 업종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지역에 관한 사항만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고 업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의 고용위기는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과 업종에 관한 고용조정지원 제도를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제도의 연계성 및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입법 목적과 내용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고용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제정안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중앙정부의 관리·평가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간의 균형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역고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지역일자리대책의 성과평가 및 제언(안 제6조),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안 제16조), 평가결과를 반영한 재정지원(안 제17조), 컨설팅 등 정책지원(안 제18조),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운영평가(안 제14조제

5항),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안 제20조),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22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25조) 등 지역고용 정책의 핵심 기능을 대부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일자리대책의 수립(안 제6조),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안 제11조 및 제13조),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14조 및 제15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지역고용 거버넌스 신설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⁹⁾하는 것 외에는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9조),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4조),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5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안 제25조)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 법령상 분산되어 있던 지역고용 관련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을 통합·재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지역고용 관련 심의기구와 지원조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측면도 있는 만

9) 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이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큼, 기존 조직의 인력·기능 및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과 추가적인 기
구·기관 신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

구분	정책(심의·조정) 기능	집행(지원) 기능
중앙	고용정책심의회(안 제5조) - 기본계획 심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및 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안 제25조) - 지역일자리대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개발·운영 지원 -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 지원 및 협력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운영 지원 -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 - 지역일자리대책 심의 -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사항 심의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안 제14조) - 지역일자리대책 수립·시행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 조사·연구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 지원
시·군·구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안 제9조) - 시·군·구 지역고용 정책 심의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안 제15조) - 시·군·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역고용 관련 조사·연구 및 협력 지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세부 내용에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총 5장, 2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안 제1조~제4조)은 총칙 규정으로,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안 제5조~제18조)은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제1절에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 시·도 및 시·군·구 지역고용노동 심의회와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절에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및 초광역 협력사업의 추진, 시·도 및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안 제19조~제21조)은 지역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선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안 제22조~제26조)은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안 제27조~제28조)은 보칙 및 벌칙으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부칙은 시행일, 다른 법률의 개정,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역고용 정책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입법하려는 것으로, 김태선의원 대표발의로 유사한 취지의 제정안¹⁰⁾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0) [2216477] 지역고용활성화법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6. 1. 30.

<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일반법적 지위 규정
제2장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지원	제1절 지역고용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자치단체장: 매년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공표 고용노동부: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 평가 가능
	제7조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광역 단위 의무 설치
	제8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시·도 심의회는 지역 노사, 다양한 사회계층 등 포함하여 구성, 고용·노동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
	제9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 으로 설치 가능
	제10조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구성: 고용노동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광역 부자치단체장 등
	제2절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	
	제11조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실시)	국가·자치단체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근거
	제12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기준 등을 지역별 달리 적용可
	제13조 (초광역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초광역 사업 우선실시 및 지원 근거
	제14조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운영 지원, 사업시행 지원 등
	제15조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 으로 설치 가능
	제16조 (지역고용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국가: 광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가능 광역: 기초 지역고용 활성화사업 평가 가능
	제17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6조·제16조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제18조 (지역고용활성화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자치단체 역량강화 위한 지원 가능
제3장 지역고용 조정지원	제19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적 근거 마련
	제20조 (고용위기지역)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 가능
	제21조 (고용재난지역)	기존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이관
제4장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	제22조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수행·성과평가 등 목적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필요시 건강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
	제25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사업평가·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한고원)
	제26조 (국제협력)	국제기구 등과 협력사업 가능
제5장 보칙·벌칙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지방관서장 위임 또는 관계기관·단체 위탁 가능
	제28조 (벌칙)	직무상 비밀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	제1조 (시행일)	2028.1.1. 시행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개정
	제3조 (지역일자리창출대책 경과조치)	지역일자리창출 대책 근거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경과조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설치, 3년 유예 가능
	제4조 (고용조정지원 경과조치)	지역 고용조정 지원 근거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 고용정책 기본법 및 제정안의 내용 비교 >

고용정책 기본법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안)	지역고용활성화법안 (김태선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제2조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정책·사업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4조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9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제5조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제9조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7조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제7조 (시·도 고용심의회)
	제8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시·군·구 고용심의회)
	제9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제9조 (고용심의회 운영 등)
	제10조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제11조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제6조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제12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제13조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15조(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16조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제17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18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제10조 (지역일자리사업 컨설팅 등 지원)
		제11조 (지역고용영향평가의 실시)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장 지역고용조정 지원	제3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19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제20조 (고용위기지역)	제13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14조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15조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
		제16조 (고용위기지역 청년취업 지원)
제32조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제21조 (고용재난지역)	제17조(청년 고용과 핵심인력 장기 재직 촉진 지원)
	제4장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조성	
	제22조(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2조 (지역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제14조(국제협력)	제26조 (국제협력)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8조 (벌칙)	제19조 (벌칙)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지역일자리창출대책 경과조치)
		제3조 (지역고용심의회 경과조치)
	제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고용위기지역 경과조치)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조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의 질 개선 및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및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노동계,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¹¹⁾

제정안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고용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국가 주도의 확일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39.

적인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 조항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일자리의 질 개선 및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르는 정책의 수단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안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재원 확보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은 지역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2조는 “지역고용 활성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고용 활성화”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며, 지역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고용안정, 경력개발, 노동환경 등 일자리 질의 개선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 주도의 사업을 말한다. 3. “시·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4.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지역의 주된 사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역 고용사정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고용위기지역”이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고용재난지역”이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제21조에 따라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지역고용 활성화”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고용위기 지역” 등 법률의 주요 개념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법률적 용어의 정의가 미비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의 조항을 통해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지역고용 활성화”와 제2호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정의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안 제11조제1항 각 호¹²⁾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정의 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안 제11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시·군·구 간, 시·도 간 등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사업의 범위가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업
2.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지역의 청년·여성·고령자·비정규직 등 대상별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지원 등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증진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7.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둘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하여, 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각각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조문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의 정의 규정에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도”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3호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2026년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었으므로,¹³⁾ 이를 반영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4조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법률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 또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짐.¹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 제4조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한 이 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이 모법 격인 「고용정책 기본법」의 지역고용 관련 조항(제9조, 제9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등)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분리·이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4)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책, p. 258.

오히려 「고용정책 기본법」과의 관계에서는 이 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제정안이 지역 차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¹⁵⁾한다는 점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¹⁶⁾과의 관계에서도 제정안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가 전제하는 일반법·특별법 관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2조¹⁷⁾는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원 절차·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이 오히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4조가 정한 ‘다른 법률 우선, 이 법 보충 적용’이라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개별 조문에서 설정한 것으로 보임.

15)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고용 활성화”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며, 지역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

17) 안 제12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소관 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일자리 대책

(안 제5조·제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일자리 대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고용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일자리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할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제언을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조(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공표된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안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 청취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또한,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지역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3조는 기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제정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

가 차원의 기본계획 - 지역 차원의 일자리 대책 - 개별 사업'으로 이어지는 정책·집행체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는 다층적 계획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입법하면서,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체계로 전환하고, 기존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경우에는 수립 주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계획의 명칭을 '지역 일자리 대책'으로 변경하였음.

< 지역고용 정책 수립 체계 관련 조문대비표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안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	

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고용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일자리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할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에 관한 제언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u>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u>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할 수 있다.</u>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제언을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u>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이를 통해 지역고용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별도의 정책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제정안의 심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계획 수립 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부합하는 ‘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즉, 고용노동

부장관은 전국의 고용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고용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임.

반면, 제정안은 기존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일부인 지역고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고용 전반에 관하여 수립하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규정은 삭제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개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러한 계획 수립 체계의 변경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고용정책 수립 기능과 정책 추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 등 수립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일자리 대책을 평가하고 제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그 제언의 우선적 반영을 위해 노력하도

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제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영 노력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 제시 권한 보다 중앙정부의 관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제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지방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고용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과 산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 같은 조 제4항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상 용어는 각각 고용정책심의회 및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

해 보임.

또한, 안 제6조제2항¹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모두 ‘지역일자리 대책’으로 약칭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임기 중 수립하는 종합계획까지 매년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공표 대상에 부합하는 공표 주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6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6항¹⁹⁾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와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언’은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기 어렵고,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5항에서는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견 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18) 안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2제1항제6호에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하여 ‘의견 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지역고용 관련 거버넌스

(안 제7조~제10조, 제14조·제15조, 제25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제14조·제15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안 제25조) 등 지역고용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안 제7조(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및 제8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5조(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7조(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 구조나 경제권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지역일자리 대책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내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및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원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해당 시·도의 조치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가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인 경우에는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지역고용노동 및 인력양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단체 등 지역고용노동 관련 단체의 대표
 6.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도 교육청 등에서 지역고용노동 또는 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는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인적자원협의회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협의회

⑤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

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시·군·구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심의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권이나 산업기반 등이 인접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 심의회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군·구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협의회(이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2.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3.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4.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③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에 따른 초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고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지역고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등 지역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고용의 현황 및 동향 조사·분석

2.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공표 지원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및 운영 지원

4.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의 개발 및 시행 지원

5. 지역 내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지역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나.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다.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라.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마.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사업 수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7. 지역 내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시·군·구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지원기관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원기관의 기능,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 평가 지원
2.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개발·운영 지원
3. 제14조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실태 평가 등 지원 및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지원

5.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6.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운영 등 지원

7. 제22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지역고용노동심의회(시·도 및 시·군·구),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고용노동부),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시·도 및 시·군·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한국고용정보원) 등 지역고용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총괄

제정안은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 기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²⁰⁾의 심의를 거치도록 활용²¹⁾하는 것 외에는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9조),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4조),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5조),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안 제25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 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정안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

구분	정책(심의·조정) 기능	집행(지원) 기능
중앙	고용정책심의회(안 제5조) - 기본계획 심의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안 제25조) - 지역일자리대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개발·운영 지원 -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 지원 및 협력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및 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운영 지원 -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 - 지역일자리대책 심의 -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사항 심의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4조) - 지역일자리대책 수립·시행 지원 -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 조사·연구 및 지역고용 거버넌스 지원
시·군·구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9조) - 시·군·구 지역고용 정책 심의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안 제15조) - 시·군·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역고용 관련 조사·연구 및 협력 지원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²²⁾에서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²³⁾에서도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을 통해 지역고용 관련 심의기구와 지원조직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위원회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구별로 기존 조직의 활용 가능성, 추가적인 기관 신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지역고용노동심의회(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는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시·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⁴⁾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²⁵⁾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²⁶⁾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²⁷⁾ 등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였음.

24)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0.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7)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에 비해, 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상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²⁸⁾ 그 명칭을 ‘지역고용노동심의회’로 변경하여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면서, 그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처럼 제정안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고용노동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시·군·구 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고유의 일자리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고유의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8) 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둔다.

(이하 생략)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둔다. <후단 삭제> ② ~ ⑤ (생략) ⑥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²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체가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일률적으로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심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제4항제2호).

그런데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로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심의회의 하부조직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기존 협의체의 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현행법은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한 후 기존 협의체를 그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개편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9)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후단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 지역고용 관련 주요 거버넌스 현황 >

	<광역>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기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법적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노사관계발전지원법	노사관계발전지원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설치	광역 17개	기초 135개	광역 16개
위원장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공동) 부단체장, 사무국 설치기관의 장
구성	자치단체, 지방관서, 노사단체, 전문가	좌동	자치단체, 지방관서, 산업계, 노사단체, 대학, 전문가
운영	본회의 연 1~3회 실무분과회의 연 1~10회	좌동	본회의 연 3~4회 실무분과회의 연 20회
사무국	11개(지역 노총·경총 등)	27개(지역 노총·경총 등)	16개(지역상의, 경총 등)
운영 예산	약 16억원 (사업비 및 사무국 운영비 포함)	-	약 5억원 (사무국 운영비)
기능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업대책 ■지역 노사관계 안정	좌동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운영 ■지역 훈련수요조사, 인적자원개 발 자원 배분 및 조정

자료 : 일자리위원회,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2019.9.3. 관계부처 합동

둘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안 제7조제3항제7호는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심의회 기능을 지역고용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심의회의 명칭에 ‘노동’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주된 입법목적이 지역고용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회의 기능과 명칭을 노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 안 제7조제3항제2호는 ‘해당 시·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³⁰⁾의 실시 주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되는바, ‘해당 시·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이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 중 해당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7조제3항제5호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 평가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평가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수립 단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수립된 평가계획의 집행에 해당하는 ‘시행’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심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의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 안 제2조제2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고용안정, 경력개발, 노동환경 등 일자리 질의 개선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 주도의 사업을 말한다.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원특별자치도는 안 제7조(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에 대하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협의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할 경우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기도 이천시는 안 제9조(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에 대하여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³¹⁾에 따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시·군·구에 설치된 노사민정협의회가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 제8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안 제10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고용 활성화는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인력양성·산업·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과 조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가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및 중앙·지방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3항),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그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2항).³²⁾ 그런데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지역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³³⁾ 심의·조정 결과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성

32) 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10조제5항)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그 의견이 정책심의회³³⁾의 심의 이전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³⁴⁾이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³⁵⁾의 심의·조정 대상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에 관하여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와 고용정책심의회 간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와 고용정책심의회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두고 있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이 외에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으로 두는 반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근로자·사업주 대표 및 고용문제에 관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양 기구의 구성에 유사한 측면이 있음.

33) ① 초광역적 정책수요 대응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주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시행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등 지역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안 제10조제3항 각호)

34) 안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고용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비교 >

구분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고용정책심의회
의장·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인
근로자·사업주 대표	없음	있음
전문가	없음	있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가 고용정책심의회와 별개로 지역고용정책을 대상으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심의회 등 기존 위원회 체계를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부 내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가 지

역고용 활성화 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며, 심의·조정 결과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경영계 및 지역 고용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³⁵⁾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시행일부터 5년간’과 같이 기간을 규정하거나 ‘2029년 4월 24일까지’와 같이 특정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어느 시점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법 형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참고 입법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한다.

(4)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제14조·제15조) 및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안 제25조)

제정안은 지역고용 정책의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제14조·제15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지역 고용 정책이 단순 행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조사·분석·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전문 기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별 전담 기관 설치를 통해 지역 간 고용 지원 역량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지역 고용 추진 체계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

할 수 있으며, 중앙 차원의 지역고용정책 지원 전담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안 제14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나 유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항 제6호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을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6호 문언상 지원기관이 평가 자체를 시행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를 지원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제16조제1항³⁶⁾에 따른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 해당 시·도가 시행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의 시행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6) 안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둘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 주체와 재정지원·운영평가의 주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의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이에 따라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이에 연계된 평가·관리 권한은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인바, 기관의 설치·운영 주체와 재정지원 및 평가·관리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기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4조제6항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⁷⁾

37) 안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주체는 시·도지사임에도 위탁업무의 부정·부실 수행에 따른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 등 위탁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 제한만으로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되, 시·도지사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4조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³⁸⁾ 운영 위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

⑤ (생 략)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8) 안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고용의 현황 및 동향 조사·분석
2.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공표 지원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및 운영 지원
4.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의 개발 및 시행 지원
5. 지역 내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지역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 갖추어야 할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부칙에서 규정한 ‘제14조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 제14조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기관 업무에 “지역 내 취약계층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구 지원기관에 대하여도 안 제15조에 동일한 준용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안 제25조(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에 대하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나.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 다.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 라.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 마.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사업 수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7. 지역 내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 등 업무 협력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안 제11조~제1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1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동향·전망 조사, 지역의 인력양성, 청년·여성·고령자·비정규직 등 대상별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근로복지 증진,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소관 사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맞춤형 지원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단일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도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11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시·군·구 간, 시·도 간 등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사업의 범위가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업
2.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지역의 청년·여성·고령자·비정규직 등 대상별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지원 등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증진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7.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소관 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단일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력양성, 대상별 고용촉진, 근로복지 증진, 고용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되어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8호³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역

39)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고용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시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직업지도 등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고용 지원 사업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여타 법률에서 규정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제2항⁴⁰⁾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비하여 높은 지원비율을 적용한다는 의미하는지, 지원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 제11조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혜택을 실

40) 안 제13조(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단일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계 이해, 산업안전보건 조치 점검, 나아가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안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상담·지도 및 권리 구제 대리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평가 및 컨설팅

(안 제16조~제18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가 실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아울러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는 국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규모 및 보조비율 우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차등

배분,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사업 지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국가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가 실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시·군·구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평가를 위하여 관계 시·군·구청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규모·보조비율 우대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차등 배분
4.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안 제16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7조), 지역고용 정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안 제16조의 지역고용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평가체계는 ①고용노동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평가(안 제6조),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안 제16조제1항), ③시·도지사의 시·군·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평가(안 제16조제2항) 등으로 구분됨.

< 제정안에 따른 평가 및 보상 >

조문	평가 주체	평가 대상	평가 내용	결과 공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보상
제6조 제4항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	공표 가능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표창 등
제16조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	시·도	시·도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표 가능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표창 등
제16조 제2항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	시·군·구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시·군·구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통보(제3항)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표창 등
제16조 제6항	고용노동부 장관	지방자치 단체·시·도	제16조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제6조의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평가	통합평가 가능	제17조에 따른 재정지원·표창 등
제17조 (보상)	국가 / 고용노동부 장관	평가결과 가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담당 공무원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 계 우대, 지역소멸대응기금 차등배분, 보조사업 지원 / 표창·포상금

이 중 안 제16조의 경우 조 제목(지역고용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이
나 체계상 동 조항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규정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평가 대상과 범위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고용정책 기본
법」 41)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안에서 별도의 평가규정을 마련

4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

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6조제6항⁴²⁾은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2025. 10. 1.>
 -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2) 안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지역 일자리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역일자리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안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7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안 제17조제1항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평가결과를 단순히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의 경우 제4항⁴³⁾에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6조는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보상의 대상이 되는 평가결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적용 대상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의 근거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17조에 따른 보상에는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군·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결과도 포함되는바, 시·도지사가 실시한 평가결과를 국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보상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가 주체와 지원·보상 주체가 상이한 구조가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7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에서 평가 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

43)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역고용 활성화 관련 시책을 해당 분야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안 제17조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 제16조 사업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형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고용의 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노무사·변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8조에 컨설팅 업무에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준수 현황 점검, 인사·노무관리 체계 진단, 근로조건 개선 방안, 사회보험 적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컨설팅을 고용노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가(공인노무사·노무법인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 지역고용조정지원(안 제19조~제21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지역고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9조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0조는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용조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6개월마다 고용위기지역의 운영 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는 고용재난지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재난 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용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행정상·재정상·금융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19조(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지역의 주된 사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원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위기지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

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고용위기지역의 운영 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절차,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지원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용재난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행정상·재정상·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선포”로 본다.

제5조(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해제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⁴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지역 고용조정지원 제도를 이 법에 분리·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의 입법 목적은 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데⁴⁵⁾ 반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제도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시적 지원제도로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정책수단이라기보다는 고용위기에 대한 비상

44)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45)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일자리의 질 개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대응수단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지역 고용조정 지원 제도를 별다른 내용의 변경 없이 이관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고용 위기지역의 지정은 이 법으로 이관되더라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제1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경제 및 법체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지역 고용조정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는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고용조정지원 제도는 지역과 업종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지역에 관한 사항만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고 업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유지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제1항). 그러나 지역의 고용위기는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과 업종에 관한 고용조정지원 제도를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제도의 연계성 및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생략)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 10. (생략)

③ ~ ⑥ (생략)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업종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업종
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2항에-----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

⑤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u>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u> <u>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넷째, 안 제21조의 고용재난지역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이나, ‘대규모’, ‘중대한 문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선포요건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상 제도를 이관한 점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입법례⁴⁶⁾의 경우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선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 위임 등을 통한 선포요건의 구체화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1조제6항은 고용위기지역의 정기보고 및 자료제출·보완 요구 규정(제20조제4항 및 제6항)⁴⁷⁾은 준용하면서도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제20조제5항)⁴⁸⁾은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고용재난지역의 해제에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47) 안 제20조(고용위기지역)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고용위기지역의 운영 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8) 안 제20조(고용위기지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 제20조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조력 지원”을 지원 사항에 포함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1조의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도 제20조의 준용 규정을 통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자.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안 제22조~제2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22조(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별 산업 및 고용정보의 제공, 지역일자리 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전산망의 이용·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정보, 사회보험 가입 및 소득정보, 재산정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장애 정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자격취득 정보, 학교교육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고용 관련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관리를 위하여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는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권한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행기관이 각각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은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며, 평가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참여자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법인·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고용노동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역일자리 대책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와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8조(벌칙)는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22조(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수집·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산업 및 고용 정보 제공 2.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8. 장애 정도
9.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0.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1.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2.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13.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특성
2.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⑤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제16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28조(벌칙)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의무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높은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고용 실태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⁴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49)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장관은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의 고용정보시스템이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라 수집·보유·이용되는 정보는 「고용정책 기본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보유·이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과 제정안의 관리 정보 목록 비교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제3항	제정안
사업자등록증	동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동일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동일
주민등록등본, 초본	동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동일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동일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
출입국 정보	-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동일
장애 정도	동일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동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동일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동일
1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동일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경우 유사한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기존 고용정보시스템의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둘째, 제정안은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정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장애 정도, 학교교육 정보 등 사업자등록증·4대 보험 정보·주민등록·자격취득 정보 등 13개 항목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 또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기관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목적이 지역별 산업 및 고용 정보 제공, 지역일자리 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28조는 제23조제6항⁵⁰⁾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안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⑥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⁵¹⁾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으로 이해되나, 「고용정책 기본법」⁵²⁾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내용 및 보호법익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교육부는 안 제22조에 대하여 학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보시스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22조에 대하여 자료 요청은 정책 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수집 또는 제공 대상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

5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금지 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52) 「고용정책 기본법」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일자리 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차. 국제협력(안 제2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26조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의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26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지역 고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의 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도⁵³⁾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자 간 노동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 및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3) 「고용정책 기본법」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카.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7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2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행정기관의 직무와 권한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데 권한의 위임·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타. 부칙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제2조는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규정함.

구체적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심의회 및 고용위기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제도로 이관하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규정을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체계로 개편하도록 하며, 그 밖에 「고용보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인용조문을 이 법에 맞게 정비함.

아울러 제3조는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는 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둔다.

제32조의 제목 중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을 “업종별 고용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또는 지역에”를 “업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에”로, “업종 또는 지역을”을 “업종을”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을 “지역 및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을”로 한다.

③ 법률 제2113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4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⑧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제3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3조(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해제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1) 시행일

제정안은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지역고용노동심의회 등 추진체계 구성, 지원기관 설치, 평가체계 구축, 하위법령 제정, 관계 법률 정비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유예를 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안의 심사기간에 따라 실제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국회의결 및 공포 시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행 유예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은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총 8개 법률의 해당 조문을 법 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는데, 법률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지역고용심의회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은 제정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단순 인용조문의 정리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를 의결 전제 법안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수행한 사무의 효력이나 진행 중인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경과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제정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폐지하였음에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 및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서 지자체의 지역 고용 정책 지원을 위해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고용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상 전문연구기관을 계속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2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삭제> <삭제> ③ -----지역 및 산업 부문별 인적자원개발을-----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셋째,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칙 제2제3항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 방식을 적용하여 ‘법률 제2113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 발의

이후 해당 법률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⁵⁴⁾ 이를 반영하여 현행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인용 조문을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고용위기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용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 -----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54)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다섯째, 조문의 배치 순서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시행일’ 다음 순서로 배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칙은 시행일,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⁵⁵⁾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 순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3) 경과조치

제정안은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및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입법례에 따라서는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시한을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⁵⁶⁾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35

55)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책, p. 844

56)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336호, 2024. 2. 20.>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하여야 한다.